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 시·도 관계자 간담회

2022. 6. 1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 시·도 관계자 간담회

□ 회의개요

○ 일 시 : 6. 15. (수) 14:00

○ 장 소 : 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자

- (시·도) : 조직담당관 등

- (협의회) : 사무총장, 분권정책국장, 분권제도연구부장 등

○ 논의안건

-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위한 각 시·도 의견 및 요청 사항

-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 방향과 전략 마련

○ 시간계획(안)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등 록	13:30~14:00	30'	◦ 접수 및 안내	
회 의	14:00~14:05	5'	◦ 토론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분권제도연구부 연구위원
	14:05~14:10	5'	◦ 인사말씀	사무총장
	14:10~14:20	10'	◦ 자치조직권 과제 추진 현황 설명	분권제도연구부장
	14:20~15:20	60'	◦ 개별 시·도 발표(약 4분씩)	17개 시·도 전원
	15:20~15:35	15'	◦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폐 회	15:35~15:40	5'	◦ 정리 및 폐회	분권제도연구부장

□ 추진배경

- ‘자치조직권 확대’ 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 측의 지속적인 건의, 여전히 지방정부의 조직권은 제한 및 규제받고 있는 상황
-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시·도 의견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안건(자치분권 2.0 발전과제)으로 논의 (1.13.)
 - 대전, 세종, 서울 등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성 주장*
 - * 자치조직 3급 이상 탄력적 조직 운영 필요, 기존 기준인건비와 의회통제 강화 등 이중 규제 → 행정기구 관련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을 조례로 위임 필요
-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 전략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5.2)
 -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심화된 전략적 추진 방안 모색

《자문회의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 법률로 규정
- 현행 대통령령의 제약 사항 완화 및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조례로 위임
- 지방교부세 항목에 지방공무원 인건비 제외
- 지방의회가 집행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견제하는 방안
- 기타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도입

□ 향후계획

- 정부 측 입장 대변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 정부 측 입장 파악하여 행안부에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 시 대응
-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
 - 행안부와 협의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자율성 강화 방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지방자치법, 지방행정기구정원규정 등 법령에서 지역특성·행정수요 등에 관계없이 인구기준으로만 지방조직 규모, 사무분장, 직급 일률 규정
-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 자치권의 핵심 요소
-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지도·감독에서 협력관계로 발전 필요
 - 지방의 정책역량 증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라는 인식전환 필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기준인건비제 개선 및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운영 등 관련 규정 개정

* 주요 해외 사례 *

- 연방국가는 중앙정부의 개입 배제, 주정부 법률에서 자율로 결정
 -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 연방국가는 모두 주정부 이하 단위(주정부 또는 그 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인사 등 자율 결정
- 단일 국가도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 조례 위임
 -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선발 및 임명과 조직 관리권 인정
 - 일본 지방자치법(제155조, 제158조)은 조직, 사무 등을 조례로 결정 위임('03~)

□ 개선방향 및 주요내용

- (단기) 지방정부(지방의회 포함) 기구 설치기준 자율성 확대
 - 시·도 및 시·군·구 기구설치기준 및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 자율성 확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인 보장 위해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
 - 한시기구 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행정안전부와의 각종 협의절차 완화

○ (장기)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전면 보장

- 지방의회 사무기구, 부단체장 및 지방소속 직속기관 등 지방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공무원 정원 운영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 지방행정기구의 공개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

- 전국 지방정부 조직 현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 비교 정보공개
- 지방정부별 비교검토 가능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자정 효과 기대

* 일본 총무성, 매년 지자체 정원 관리현황 유사단체와 비교 조사 및 공표

□ **향후 계획**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사항 우선 추진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규정 개정
-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기준인건비제 분리·운영 및 증액 조정 등 우선조치 필요사항 개선

○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

- 시·도, 지방협의체, 관련 전문가 함께 논의하여 안건 숙성
- 자치조직권 강화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 쟁점별 개선안 마련 등
- 행안부와 협의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추진

I.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 자치권의 핵심 요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지 않는 극소수 국가임
※ 자치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2003년부터 조례에 의한 조직설치권 부여

□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지도·감독에서 협력관계로 발전 필요

-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투명성·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필요
- 조례의 대폭 증가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보는 기존 인식의 대전환 필요

< 지방정부 조례·규칙 보유 현황 >

연도	1994	2004	2014	2020
조례	33,982	39,376	63,476	91,100
규칙	16,565	20,258	23,687	25,085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22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준 인건비제 개선 및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운영 등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획일적으로 규제

-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에 관계없이 부단체장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
- 대통령령에 의한 사무분장, 조직구성권 제약
 - 조직 기본요소인 공무원, 직급 등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중적 규제에 해당
- 『기준인건비제』도 운영하고 있으나, 탄력적 행정기구 운영에는 한계

*** 주요 해외 사례 ***

- 연방국가는 중앙정부의 개입 배제, 주정부 법률에서 자율로 결정
 -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 연방국가는 모두 주정부 이하 단위(주정부 또는 그 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인사 등 자율 결정
 - ▶ 미국은 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부 법률 또는 시 헌장으로 규정
(뉴욕주 헌법- 뉴욕주 법률 - 뉴욕시헌장, 캘리포니아주 헌법- 로스앤젤레스시 헌장)
 - ▶ 독일은 주정부의 지방자치법에서 결정
- 단일 국가도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 조례 위임
 - 프랑스, 일본 등 단일 국가도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 사항
 - ▶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선발 및 임명과 조직 관리권 인정
 - ▶ 일본 지방자치법(제155조, 제158조)은 조직, 사무 등을 조례로 결정 위임('03~)

II. 개선방향 및 주요내용

《 개선방향 》

(단기) 지방정부(지방의회 포함) 기구 설치기준의 자율성 확대

(장기)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전면 보장(지방기구정원 규정 폐지)

1 (단기) 지방정부(지방의회 포함) 기구 설치기준 자율성 확대

- 시·도 및 시·군·구 기구설치기준 및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 자율성 확대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본부 수를 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 및 직급 조정 등 상세 규정
 - ➔ (개선) 조례위임 사항 증대 등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대통령령 개정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인 보장 위해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
 - (현행) 집행기구와 지방의회의 기준인건비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운영 중, 의회사무처·국·과 설치에 대한 상세한 요건 규정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권 전무(全無)

➡ (개선) 기준인건비제 운영주체에 지방의회의장 추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분리 및 증액,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 부여

○ 한시기구 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행정안전부와의 각종 협의절차 완화

-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한, 3급 이상 직급설치 및 인력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경우에 행안부 장관과 협의 등 제한 규정

➡ (개선) 자율성 제한 규정 삭제(완화)

2 (장기)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전면 보장

○ 지방의회 사무기구, 부단체장 및 지방소속 직속기관 등 지방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공무원 정원 운영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준 명시

➡ (개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닌,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 지방자치법 개정 및 해당 대통령령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조직권 보장 결과('06), 실·국·본부 수 및 고위공무원 수의 큰 폭 변화 無 일부 변화는 특행기관 흡수, 국가사무 이양, 자치경찰 신설 등에 따른 변화로 분석

< 2006~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본부 수 현황 >

연도	'06~'10	'11~'15	'16~'17	'18	'19~현재
실·국·본부 수	11	12	13	14	15

< 2017~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고위공무원 현황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고위공무원 수	22	24	24	24	24

3 지방행정기구의 공개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

- 전국 지방정부 조직 현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 비교 정보공개
 - (현행) “행안부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매년 17개 시·도 공동 작업으로 지방행정조직편람 발행 중(외부 비공개)
 - ➔(개선) (가칭) 「전국 지방정부 행정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방정부별 비교검토 가능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지방정부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자정 효과 기대
 - * 일본 총무성, 매년 지자체 정원 관리현황 유사단체와 비교 조사 및 공표

Ⅲ. 향후 계획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사항 우선 추진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규정 개정
-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기준인건비제 분리·운영 및 증액 조정 등 우선조치 필요사항 개선

2 자치조직권 확대 TF 구성 · 운영

-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
 - 시·도, 지방협의체, 관련 전문가 함께 논의하여 안건 숙성
 - 자치조직권 강화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 쟁점별 개선안 마련 등
 - 행안부와 협의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추진

□ 시·도 의견

1. 지방정부의 조직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사항

[행안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현행 지방정부 조직 관련 규정 중 문제점]

-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지자체 '기구와 정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기구정원규정 제4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실질적으로는 기구정원규정 등에 다양한 제한 규정이 있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특히, 부단체장·실국 수 등의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제한(지방자치법 제123조, 기구정원규정 제9조, 별표1)하고 있으며,
 - 특례규정(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시도 실국본부수 상한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신설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2019년)하였으나,
 - 이는, 실제 운영 상 기구정원규정 제9조에 따른 실국본부수 설치 범위 외 별도로 규정 될 실익이 없음(불필요한 절차 양산)
 - 부단체장의 경우도 특히 도 단위 지역은 자치단체 면적, 지역별 특수성(영동, 영서 등)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만으로 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자율적 조직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 초래
- ⇒ 각종 기구 수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 등을 통한 자체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 각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조직설계·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직권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방이양 필요

- 자치분권 2.0에 따라 다수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상황임에도 현행 규정 하에서 지방행정 수요에 적합한 행정기구 확대는 불가능한 상황임
- 방만한 조직운영이 되지 않도록 기준인건비 등 일정 기준은 유지하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점진적 개선 필요

⇒ '부단체장 정수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 운영에 한계

▶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 특별시 부시장 3명
- 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부지사 2명(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3명)

- 단체장의 과도한 역할 완화와 긴급한 행정수요 적기대응을 위해 부단체장에 권한위임이 필요하며 현행 일률적인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 장기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게 조정 필요

⇒ ‘실국 설치기준 제한’으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설치 불가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 서울 : 16~18개 / 경기 : 20~22개 / 광역 : 10~16개, 도 9~13개(인구수별 차등)

- 실·국 수 제한으로 대국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이질적 기능통합으로 실·국장 업무수행에 한계 발생
- 자치단체 실·국 설치기준 상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설치 권한 이양 등 자치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 운영범위 확대 필요

- ①부단체장의 정수(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직급(동법 시행령 제71조) 폐지,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행정기구를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확대가 필요함
- 현행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의 2가지 통제수단인 기준인건비와 행정기구 설치 법령에 의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어 기준인건비는 유지하되 행정기준 설치 완화가 절실함.
- ①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지방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수를 늘려 분야별로 실국을 통괄하고 주요 실국의 책임을 겸무하여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대외적인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자체 장에 대한 업무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부단체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은 지자체의 현실적인 여건 고려 없이 인구수로만 실국본부 설치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규행정수요와 지방분권에 따라 증대하는 지방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3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이 약한 편임. 지자체의 행정기구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또한 인구수가 아닌 직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의 조례 위임이 필수조건임.

-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자율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이중규제를 완화하여야 함. 특히, 법령에 명시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지자체의 자율적 조직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법령은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와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수 및 사무직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에서는 부단체장의 수와 직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는 실·국·본부 개수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으며, 동규정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에서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에서 한시기구가 3급 이상인 경우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서는 복수직렬의 범위와 제25조(별정직 정원)에서는 별정직의 책정기준을 정하였음.

⇒ 실·국·본부 및 자율신설기구 설치 제한기준 완화(기준인건비 내 자율성 부여)

- 실·국 설치기준 인구 구간 통합 : 5단계 → 2단계(인구 300만 미만·이상)
- 자율신설기구 설치 기준범위 상향 : (실·국 설치기준의) 20% → 30%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별표)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세분화·복잡화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시·도 인구별 실·국·본부의 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의 경우 인구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실·국·본부 수 기준을 2단계로 통합

(현행)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구분		실·국·본부의 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개선안)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구분		실·국·본부의 수
광역시	인구 250만 이상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25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관련,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단체장 역점사업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시·도 자율신설기구 설치 기준범위 상향 필요
-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 지방조직권 자율성 부여를 위하여 행정기구·정원 관리를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
- 3급 이상 기구 수 제한 ▶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 곤란
 - ※ 서울 21개, 경기 26개, 부산 19개, 인천 16개, 세종 9개까지로 제한(보조+자율)
- 기구설치 일반요건·기준 등 세부적인 제한요건 다수 존재 ▶ 기구설치(보조·보좌기관·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요건, 집행기관 명칭 등 제한
- 지자체 기구·정원은 행안부 기준인건비제, 지방의회의 통제하에 운영 및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으로 중첩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
 -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3급이상 기구 수 제한 완화, 부단체장 수 제한 완화
- ⇒ 3급이상 기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신규조직 설치 곤란
- ⇒ 부단체장 수가 지방자치법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곤란(특히, 대도시 서울의 경우 현행 부시장 3명으로는 경제, 문화, 건강, 안전 등 서울의 방대한 행정업무 수행에 한계)

-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과 정원 관리 및 활용 등은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기본 권한에 해당하나, 기준인건비제도 운영 및 실국본부 설치 수, 보조·보좌기관 등의 세부 직급기준까지 통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함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 ❶ 일률적 산정 기준 적용 ❷ 기준인건비 재산정 및 합리적 재조정 요구권 부재(지자체 → 중앙정부)
 -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 ❶ 시도별 실·국·본부 수 한도 설정 ❷ 보조·보좌기관 세부 직급 기준 통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제3항 삭제

-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 시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 국단위 기구 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토록 협의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삭제

-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는 3급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군·구는 4급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협의 규정은 지자체 기구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다양한 수요 급증에 합리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 행정수요의 질적·양적 확대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 조직의 자율성 확보

- 지방이양(1차 400개 사무 완료, 2차 262개 사무 예정)으로 인한 지방사무 증가 등 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인구중심의 조직기준 개선 필요**

○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수목적 기능 수행과 책임행정 실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대 등을 위해 **‘책임부지사제’ 신설**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위해 지방정부의 동반자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부지사 증원

⇒ 법률(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 행정조직체계를 지역 특성 및 행정수요 반영 등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조례’로 위임**

- 자치조직권의 조례 위임이 장기간 소요 될 경우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책임부지사제 신설

◆ **부단체장 정수(지방자치법 제123조)**

- ▶ (정수) 2명 이내(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 광역 시·도 3명 이내)
 - (서울) 특정업무(도시계획·건설, 상하수도 등)로 구분
 - (경기) 관할구역(31개 시군중 북부권 10개 시군)으로 구분
- ※ 2~3명일 경우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 ▶ (직무) 행정 - 사무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등
정무 - 정책, 기획의 수립 참여, 정무적 업무수행 등

◆ **실국 설치 기준 등(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 지역 행정 여건의 다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조직체제도 그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하나,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법령 등의 기준으로 인한 한계성을 갖고 있음**

① 실·국·본부(3급 기구수) 설치기준 완화

- 행정조직은 행정수요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 질적으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조직 확대가 필요하며, 실·국·본부 설치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기구수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별표 1, 별표 3]

- ▶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따라 기구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실·국·본부 설치기준인 인구수 범위 조정 또는 기구수 확대 필요

② 직속기관(동물위생시험소) 확대

- 광역 지자체의 동물위생 소속기관의 조직은 AI, 돼지열병 등 업무증가로 정원이 100여명이 넘는 조직이나 사업소로(4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 ▶ 다른 직속기관과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역할강화를 위해 동물위생관련 분야는 직속기관*(3급)으로 둘수 있도록 규정 확대 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직속기관)

⇒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상 인구수 구분하여 실국본부 수 한정, 특례로 기준상 20% 범위내 자율신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자율신설기구 또한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부작용 초래 우려 →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필요

※ 실국감축 운영시 직급상향도 행안부 협의 없이 지자체 자율화 필요

⇒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과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감사위원회는 3-4급 담당관제를 적용 하부에 과를 둘 수 없도록 규정

- ⇒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1명→2명) 지방자치법 개정
- 정무기능 등 업무분담을 위한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 : 현행 1명(일반직 1) → 2명(일반직 2)
 -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부군수 제도 명문화 :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 ⇒ 기준인건비 내에서 기구운영 자율성 완전 보장 필요
- ① 실·국·본부 설치기준(기구정원규정 별표1, 별표3) 및 자율신설기구 등 특례(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 삭제
 - ②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직급책정 협의 규정 삭제(기구정원규정 제21조)
 - ③ 지역본부 직급 기준 완화(기구정원규정 별표6) : 현재 지역본부는 2급 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개 국의 기능만 분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본부 설치 불가. 3급 지역본부 설치도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필요

2.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책정에 대한 대응 및 기준 위반 시 패널티 부여

- 기준인건비는 매년 7~8월 인건비 산정을 위한 도·시군 자료를 취합→행안부 제출→행안부에서 11~12월 경 산정결과 통보 順으로 진행
 - 기준인건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달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승인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미반영 시 기준인력 회수 및 인센티브 제외 등 패널티 부여
 -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가 교부세과에서 보통교부세에 포함시켜 교부되고 있어 실제 반영된 정확한 금액확인이 어려움

⇒ 별도의 패널티는 없으나 행안부 기준인력 책정 시 적극 대응 및 사후 관리함

- 기준인건비 한도 초과시 적용되던 보통교부세 패널티 삭제로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자율범위가 폐지('18.2월)됨에 따라 별도의 패널티는 없음
- 다만, 적정인력 기준으로서 기준인건비는 계속 산정·통보되며, 사후관리 차원으로 매년 기구정원 운영현황의 도의회 제출이 의무화됨(기구정원규정 제 40조 제1항)
- 이에 따라 지자체 자율증원이 기준인건비 범위내 가능하나 행안부 산정 기준인건비 산정단가가 3년간 동결(일반직 88,173천원)되어 인건비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기준인건비 산정은 전적으로 행안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어, 기준인건비의 재산정이나 합리적 조정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준인건비 제도는 인건비 산정에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장애인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 수, 외국인 수, 농경지 면적 등 10가지 수요 변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도시화, 노년층의 복지수요 증대, 지방소멸대응 등 경북과 같이 도농지역의 행정수요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교부세 중 인건비 건전운영 산정시(인건비 절감)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기준인건비 초과 사용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2018년도에 폐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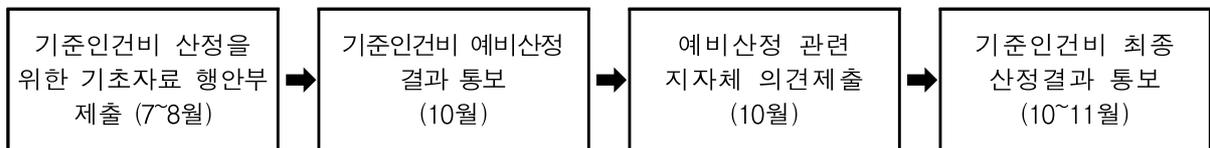
- 기준인건비 제도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로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함

⇒ 매년 7월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자료(정·현원, 인건비 결산, 별도정원 등) 작성 및 보완, 지역현안수요 기준인력 반영 노력, 우수사례 발굴 등
 ⇒ '18. 2. 이후 직접적 페널티 없음(초과운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폐지).

-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을 매년 집행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력을 준수하여 운영중
- 매년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을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라는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준인력을 제시하여 이중 규제 측면이 있어, 자치단체 인력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 ⇒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인력 폐지 필요
- 2018년 개정 이후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페널티는 원칙적으로 폐지
- 다만 인건비 절감분을 지방교부세에 반영, 기준인건비 범위 내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인건비 절감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반영 폐지 필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예비산정 결과' 통보 시,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을 하고 있으나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이나 최종 산정 시 반영된 사례가 없음

※ 기준인건비 산정 절차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건비'기준 위반 시,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 삭감 및 동결, 조직·인사 관련 협의 시 기구신설, 결원보충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음

- ⇒ 매년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10개 행정수요지표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제출하고 있으나, 요청 인력과 최종 산정인력(기준인건비 배정)의 괴리는 상당히 큼. 이에, 긴급/긴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분야에 최소 증원하고 인위적인 강제 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필수 소요 인력에 못 미치는 부서, 조직 구성·운영 불가피
- ⇒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별도의 패널티(보통교부세 감액)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시기구 및 행안부 협의가 필요한 별도 정원 승인 등에 직·간접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

- ⇒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운영계획 수립 후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쇠퇴기능 재배치 인력과 함께 조직개편(정비) 시 반영
- ⇒ 현행 법령(기구정원규정) 및 조직관리 지침에 기준인건비 위반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없으나, 초과하여 인력을 증원 할 경우 증원분에 대한 국비(보통교통세)를 지원받지 못함

- ⇒ 기준인건비 산정은 행안부 반영 통보되고 있으며 재산정 및 조정 요구는 할 수 없으며, 기준인력은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공통 수요가 있을 경우 미반영 되었을때는 인력 운영에 애로

- ⇒ 신규·현안사업에 대한 인력확보 행안부 및 관련 부처 건의 병
- ⇒ 사업별 기준인력 사용 내역 매년 확인, 미사용 시 회수 조치

3.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조직에 대한 감독

- 행안부에서는 정기적인(2~3년 주기) 시도 조직감사(기구정원규정 제34조제4항)를 통해 조직관리 실태를 감사 → 시정조치 등
- 기타 각종 협의 시(결원보충 승인 협의 등) 폭넓게 조직 전반을 점검(협의 건과 직접적 관련 없는 부분까지 확대) 하는 등으로 감독기능 행사

⇒ 기구정원 규정에 의한 협의, 조직감사 및 시정조치 명령, 조직관리지침 시달 등

- 3급이상 한시기구·소속기관 설치시 직급채정 협의(기구정원규정 제21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협의(기구정원규정 제23조)
- 3급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임명시 직급채정 협의(기구정원규정 제31조의2)

- 3년마다 행안부의 조직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시정요구)에 의해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은 요구받은 지자체장은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치체는 중앙정부의 설치 기준을 벗어 날 수 없음.
- 또한, 자율신설기구 설치 및 연장, 한시기구·지역본부 설치, 별도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감독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4년 주기) 및 매년 상·하반기 기구·정원 통계를 통해 모니터링 진행.

-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력 정원반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기적(3~4년)으로 행안부 조직감사를 통해 자치단체 조직 운영 적절성 여부를 감독

⇒ 행정안전부는 ‘기구 및 정원관리 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음(3~5개 시·도)

※ 기구 및 정원관리 감사 개요 (행정안전부)

- ▶ (시기) 연 2회(상·하반기 4월, 10월) / (대상) 3~5개 시·도(관할 시군구 포함)
- ▶ (감사내용) 조직관계 법령·지침 준수 여부,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 여부 등 최근 3년간 조직 운영 현황 및 정원관리 실태 점검
- ▶ (감사결과 통보·처리) 감사결과 통보(행안부, 감사종료 후 70일 이내) → 감사결과 이행 조치(자치단체, 30일 이내) → 적정성 확인(행안부)

⇒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조직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정기적인 조직분야 감사를 통해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패널티(다음 연도 정원 감축 등)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 관리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주기적인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 반기별 ‘조직통계’ 및 ‘조직운영 실태감사’

⇒ 시도 조직감사(4년) 시 조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실시, 감사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해 미이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이행 요구

⇒ 기구정원 감사 실시(약 3~4년 주기)

4.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권 독립 후 정착 초기 단계로 문제점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기능과 인력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 조직의 일부 규정 완화가 필요(정원 지속 확대 요청) <p>⇒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2급 단수로 조정하여 국 설치, 전문위원 수 확대 등(기구정원규정 제15조 제1항, 제2항, 별표4,5) 개정 검토</p>
<p>⇒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조직권 분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제103조)되면서 집행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 - 그러나 조직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실질적인 의회의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준인건비를 각각 산정하고, 기준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시행('22.1.13.)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인력 규모를 정하는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 있음 - 의회사무처장은 2급이지만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4급으로 그 사이인 국장직제(3급)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상향을 요구 하고 있음. - 인사권 독립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파견되는 인력으로 사무처를 운영하였으나 인사권 독립 후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명확한 업무의 구분으로 이어져 의회 정원 증원이 예상됨
<p>⇒ 시·도의회 간 단순 비교 등을 통해 기구·정원 규모를 신설·확대하려는 사례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정원 설치시 능률성 또는 주민편의성 측면보다 정치적 타협 과정이 우선시되는 경향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4급)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전문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5급 전문위원 정원 또는 5급 담당(팀장) 정원 책정 요구
<p>⇒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추어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의정활동 업무 특성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기준인건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와 지방의회의 기구·정원 조정 및 인건비 관리 주체 이원화 ◦ 시의회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임용 및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市 내부 지침인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적용에 한계 ◦ 임기제공무원 관련 법령 유권 해석 및 행안부 세부지침 마련 필요 <p>※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유권해석 요청 및 건의사항 제출」(’22.4.27., 서울시 → 행안부)</p>
<p>⇒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제도는 의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조직 및 정원 관리는 여전히 집행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집행기관은 의회를 통해 감시, 견제 받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조직 및 정원 통제가 곤란한 관계임. 따라서,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 후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조직 권한까지 함께 독립시켜 조직, 인사 분야 책임성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p>
<p>⇒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과도한 정원 증원 요구</p>
<p>⇒ 집행부의 견제 기능 등 강화를 위해 정원 증원 요구 지속,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했던 정책지원관 유사인력에 대해서도 유지 의견</p>
<p>⇒ 인사권만 독립되고 조직권은 집행부에 남아있어 집행부-의회간 갈등 소지가 있고, 특히 기준인건비 운영에 있어 집행부-의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운용 시 어려움 예상</p>

5. 기타

- 지자체에서는 특성에 맞는 각종 국제행사 개최 및 대형 프로젝트 등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등의 필요성이 수시 발생
 - 이를 위한 직급책정 협의나 결원보충 승인 요청 시 협의사항도 실제로는 제한적인 승인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적절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나 과도하게 임의적이고 제한적),
 -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완화가 필요
 - 특히 협의사항과 직접 관련 없는 조직·인사 관련 사항의 개선을 전제로 제시하거나 시도의 권한인 5급이하 별도정원까지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 시도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실현을 위해 대폭적인 조례 위임 필요

-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도의 감사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재산등록 범위확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사전컨설팅 제도 등
 - 대부분 시도의 감사업무 담당관이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기구정원규정 제10조, 별표2)되어 감사업무 부서에 과를 둘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 3급 단수로 조정하고 과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감사부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필요

- 기준인건비의 경우에는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장애인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 수, 외국인 수, 농경지 면적 등 10가지 수요 변수를 반영하고 인구와 면적이 기준인건비의 주요 변수이지만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구분
- 경북은 실국본부 설치기준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 실국본부 수 : 10개 이상 12개 이하]으로 충남과 동일한 기준임.
- 하지만, <표1>과 같이 경북의 인구수는 262만명, 충남 211만명으로 충남 대비 인구수가 51만명(24.1%)이 더 많으며, 기준인건비의 주요 변수인 면적은 경북 19,028km²(전국 최고), 충남 8,246km²으로 충남 대비 10,782km²(130.7%)가 넓어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과 같은 실국본부 수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함.
- 현행 실국본부 설치 기준에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한 좀 더 세부적인 설치 기준 마련 필요.

〈표1. 경상북도, 충청남도 인구수 및 면적 비교〉

시 도 별	경상북도(A)	충청남도(B)	A - B
인 구 수	262만명	211만명	51만명 (24.1%)
면 적	19,028km ²	8,246km ²	10,782km ² (130.7%)

⇒ 최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기관 직무파견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보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반영 비율이 50%에 머물러 파견제도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함.

⇒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관 간 상생·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직무파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국가기관 직무파견 시 결원보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100% 반영 필요.

⇒ 세종시는 대한민국 유일 단층 행정체제임에도 정원 및 기구 책정은 다층제인 광역 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광역 행정을 위한 최소단위* 조직 구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세종시는 인구, 예산 등의 급격한 증가와 인수 및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필요. 따라서,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등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조직 자율화를 통한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필요 있음

* 광역 행정의 관장기능 동질성 및 통솔범위 적정성을 고려, 최소 10개 실국 설치 필요

** (인구) '12년 10만명 → '22년 38만명(3.8배 ↑) / (예산) '12년 3천억원 → '22년 2조2천억원(7배 ↑)

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절차 개정

○ 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간계획(5년 단위)으로

- 기본인력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행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협의 후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및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지방의회는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대면보고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행안부 보고를 서면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 대통령 개정(보고→제출) 필요

⇒ 지역 현안 수요관련 대규모 사업(추가 기구 신설 수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안전 등 개별법령상 필수 반영 필요 인력에 대한 인력 확보 애로

⇒ 4급 인력에 대한 행안부 결원보충 승인 문제가 있어 결원을 둔 채 일반파견을 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을 4급 이하로 완화 필요.